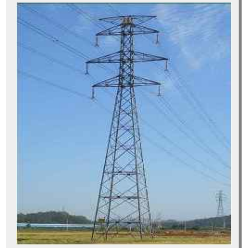


전기안전사고 및 정전예방 안내문

■ 송전선로 인근 안전작업 요령

- 특고압 송전철탑의 송전선은 피복이 없어 안전 이격거리 이내 접근만으로 감전이나 정전 발생 가능
- 송전선 근접작업시 충분한 이격거리 반드시 확보
- 법적 안전이격거리 기준 (중장비: 크레인, 펌프카, 차량 등)



송전철탑

전 압 별	154,000볼트	345,000볼트	765,000볼트
이격거리	4.8m 이상	7.7m 이상	14m 이상

※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7조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



■ 송전선로 고장 예방을 위한 안전 당부사항

- 법적 이격거리 미달로 인한 사고발생시 정전 및 설비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·제71조, 전기사업법 제100조, 민법 제750조

□ 크레인 근접에 의한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사례

[피해보상] 법면보강 중 송전선로 근접, 복구 및 정전 보상비 1천만원('17.02월)

[인명피해] 조경수식재공사 중 송전선로 근접, 작업자 1명 사망('08.10월)

- 송전선 인근 작업시 한전에 연락하여 안전조치 후 작업을 당부드립니다.

☎ 국번없이 1522-0957 또는 043- 251- 2591, 043- 251- 2566